

# TG삼보컴퓨터

정리회사 주식회사 삼보컴퓨터의  
공개경쟁입찰방식에 따른 M&A 절차에  
참가하기 위한 인수의향서 안내서

2006년 8월 7일



삼화회계법인



삼정 KPMG FAS Inc.



법무법인바른

# 목 차

	Page
I. 머리말	2
II. 인수의향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2
III. 인수의향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서류	4
IV. 인수의향서 패키지 제출기한, 장소 및 형식	5
V. 본 거래 진행절차의 특징	6
VI. 인수의향서 패키지 제출기한 후 진행방향	7
VII. 인수의향서 패키지 제출기한 후 일정	8
VIII. 기타 유의사항	8
IX. 맺음말	12

## 별첨서류

1. 신청서
2. 비밀유지확약서
3. 확약서
4. 실사보고서 수령 확약서

참고자료: 회사 요약 소개서

## I. 머리말

삼정 KPMG FAS Inc., 삼화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바른(이하 총칭하여 “매각주간사”라 하고, 삼정 KPMG FAS Inc.를 “대표주간사”라 함)은 정리회사 주식회사 삼보컴퓨터(이하 “회사”)의 잠재적 매각(이하 “본 거래”)과 관련하여 회사의 매각주간사로 선정되었습니다. 회사의 매각은 2006년 1월 5일 회사의 채권자 및 주주들이 동의하고 수원지방법원(이하 “법원”)이 인가한 회사정리계획(이하 “정리계획”)에 따라 행하여질 것입니다.

매각주간사(또는 문맥에 따라 “대표주간사”를 의미함)는 본 안내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회사의 매각을 위한 입찰절차(이하 “입찰”)를 진행할 것입니다. 본 안내서 및 별도로 제공되는 회사 요약 소개서와 일반적으로 공개된 회사에 대한 정보에 기초하여 입찰에 참가할 의향이 있는 당사자들(이하 “입찰참가희망자들”)은 입찰참가 시에 있어서 본 안내서상의 지시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모든 입찰참가희망자들은 반드시 인수의향서와 아래에서 정한 네 가지 서류들(인수의향서와 함께 이하 “인수의향서 패키지”)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II. 인수의향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

인수의향서에는 다음에 관한 설명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거래에 참가하는 입찰참가희망자들(이하 “컨소시엄 입찰참가희망자”)이 하나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경우에도 컨소시엄의 개별 구성원 별로 아래의 각 사항들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1. 입찰참가희망자에 대한 설명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와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들에 관한 간단한 설명 필요.

- a. 회사의 연혁
- b.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 및 주소(회사의 본점과 상이한 경우, 본점에 관하여도

동일한 사항을 기재)

- c. 상장주식의 내역 및 그에 따른 회사의 가치(상장회사의 경우 인수의향서 제출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전일 종가 및 그에 따른 회사의 가치)(적용되는 경우에만 기재)
- d. 소유구조(지분비율이 5% 이상인 주요주주 목록)
- e. 주요 사업
- f. 주요 자회사 및 계열회사
- g. 설립지 또는 주소지 국가에서 발행된 법인등기부등본이나 법인등록증명서 등 회사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 및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 2. 산업 및 시장에 관한 지식 및 전문성

컴퓨터 및 그 주변기기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한 입찰참가희망자의 경험과 자원들에 관한 설명. 한국에서의 현재의 투자/경영 또는 과거의 투자 내역(한국 내 주요사업 및 M&A 경험 등 포함)에 관한 구체적 언급을 통하여 참가자가 한국시장에 대하여 얼마나 정통한지에 대한 설명.

## 3. 경영전략

회사에 관하여 입찰참가희망자가 의도하는 경영전략과 계획 및 입찰참가희망자가 기대하는 기존 사업의 가치 증가에 관한 설명.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한 입찰참가희망자의 경영계획에는 입찰참가희망자가 어떻게 회사의 사업을 재조정할 것인지에 관한 설명(필요한 경우)과 회사의 인수가 입찰참가희망자의 장기 경영 전략에 어떻게 부합하는지에 관한 설명을 포함. 구속력 있는 입찰서 제출시에는 보다 상세한 전반적인 경영 계획의 제출이 요구될 것입니다.

## 4. 자금 조달

인수대금을 조달하는 방법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한 설명.

- a. 현재의 현금 및 그 등가물 잔액(아래 c.에 따라 제출되는 재무제표의 현금 계정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함)
- b. 추가출자, 차입이나 사채발행, 자산이나 투자지분 매각 등의 구체적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 계획. 각 요소별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세부적인 비율(%)을 표시 요망. 컨소시엄의 경우, 각 요소별로 그 부분의 자금을 조달하는데 책임이 있는 컨소시엄 구성원도 표시요망. 자금 조달에 관련된 승인, 조건 및 우발사항 등에 관한 기재 요망.

c. 가장 최근의 감사를 받은 재무제표 및 검토 보고된 최근의 반기 재무제표

금융투자자의 경우, 투자자의 전체 자금 규모 및 그 중 본건 투자를 위하여 사용 가능한 자금(국가와 1건당 투자액의 제한을 고려하여)의 규모에 대한 상세 내역 및 증빙 자료.

## 5. 법령상 또는 절차상 동의 또는 승인의 문제 해결 계획

법령상 관계당국의 인허가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예를 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승인 등) 또는 절차상 회사 내·외부의 동의나 승인이 필요한 경우, 입찰참가희망자는 위 문제를 해소할 방법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인허가, 동의 또는 승인을 받기 위한 상세한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6. 연락 정보

입찰참가희망자의 대표자와 본 거래와 관련하여 위임계약 체결을 예정하고 있거나 위임계약을 체결한 금융, 회계, 법률 기타 자문사들의 연락 정보(회사, 이름, 직책, 주소, 전화, 팩스, 전자메일).

## III. 인수의향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할 서류

다음의 서류들이 인수의향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1. 단독 입찰참가희망자

- a. 신청서 양식(별첨 1)
- b. 비밀유지확약서(별첨 2)
- c. 확약서(별첨 3)

- d. 실사보고서 수령 협약서(별첨 4)

## 2. 컨소시엄 입찰참가희망자

컨소시엄 입찰참가희망자는 컨소시엄의 대표자를 통하여 인수의향서 및 컨소시엄 신청서 양식(별첨 1-1의 양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각각의 컨소시엄 구성원은 비밀유지협약서, 협약서 및 실사보고서 수령 협약서를 개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컨소시엄 대표자는 반드시 하나의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이어야 하며, 복수의 자연인, 법인 또는 단체를 공동대표자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IV. 인수의향서 패키지 제출 기한, 장소 및 형식

1. 제출 기한: 2006년 8월 25일(금) 오후 5시(대한민국 서울시간, 이하 동일)까지 직접 제출한 것에 한함
2. 제출 장소: 삼성 KPMG FAS Inc.(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7번지 스타타워 10층)
3. 제출 방법: 입찰참가희망자들은 본 안내서의 지침에서 요구된 모든 서류들에 대하여 원본 1부와 사본 3부를 봉인한 상태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메일, 우편, 팩스 등의 방법에 의한 접수는 불가합니다.
4. 기타 사항: 입찰참가희망자들은 예비실사 등을 위한 자료(이하 “Information Package”)를 수령하기 위해 인수의향서 패키지 제출 이전에 아래 대표주간사 명의의 예금통장에 일금 삼백만원(₩3,000,000, 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정보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금융기관: 국민은행(스타타워지점)

계좌번호: 378801-01-008222

예금주: 삼성 KPMG FAS(주)

## V. 본 거래진행 절차의 특징

본 거래를 위한 매각절차의 주요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제정하고 2001년 10월 9일 개정된 “정리회사 M&A에 관한 준칙”, 회사정리실무 등과 정리회사 M&A 거래에서의 대한민국 법원의 일반적인 실무 관행에 따릅니다. 따라서 입찰참가희망자들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 절차에 관한 사항들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대한민국에서의 위 절차의 현저한 특징을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설명 드립니다.

- 구속력 있는 입찰** — 본 실사 후 가격 조정(가능한 경우)은 소정의 범위로 제한됩니다.
  
- 이행보증금 예치** — 우선협상대상자는 회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전에 이행보증금으로 입찰금액의 5%를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 예치** — 우선협상대상자는 회사와 투자계약 체결일에 최종인수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예치하여야 합니다.
  
- 인수대금 전부 예치** — 본 거래의 승인을 위한 관계인집회일 3영업일(대한민국 금융기관 영업일, 이하 동일) 전까지 회사가 지정하는 회사 명의의 은행계좌에 인수대금 전부를 예치하여야 합니다.

## VI. 인수외향서 패키지 제출기한 후 진행방향

제출된 인수외향서 패키지의 검토 및 정보이용료 납부 여부를 확인한 후, 회사와 매각주간사가 협의하여 입찰참가희망자들 중 회사에 대한 실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입찰참가희망자(“예비실사자격자”)를 선정합니다. 예비실사자격자는 인수외향서 패키지의 제출 마감 후 2영업일 이내에 개별적으로 통지를 받을 것입니다.

통지와 동시에, 대표주간사는 예비실사자격자들에게 실사의 시기 등 향후 진행일정에 관하여 알려 줄 예정이며, 이러한 통지와 동시에 각 예비실사자격자는 Information Package로서 회사소개서(이하 “회사소개서”), 예비실사를 위한 추가자료,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자산/부채실사보고서(이하 “회계실사보고서”), 법무법인바른이 작성한 소송현황 등에 대한 실사보고서(이하, “법률실사보고서”라 하고, “회계실사보고서”와 “법률실사보고서”를 총칭하여 “실사보고서”) 및 입찰서 등의 작성을 위한 안내서(이하 “입찰안내서”)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회사소개서 및 입찰안내서는 국문 및 영문본이 함께 제공되며, 기타자료는 국문본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회사와 매각주간사는 예비실사자격자의 예비실사를 지원할 목적으로 회사의 공장방문 및 경영진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만, 매각주간사는 자신의 고유권한으로 인수외향서 패키지 접수 및 정보이용료 납부시한 이전에 인수외향서 패키지를 접수하고 정보이용료를 완납한 입찰참가희망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예비실사자격자를 통보한 후 Information Package를 먼저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공장방문 및 경영진설명회 시기도 인수외향서 패키지 접수 및 정보이용료 완납을 먼저 한 입찰참가희망자에게 우선적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시점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 VII. 인수방향서 패키지 제출기한 후 진행일정

인수방향서 패키지 제출 후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일정은 회사 및 매각주간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사항	기일
인수방향서 패키지 제출 및 정보이용료 납부 마감	8월 25일(금)
예비실사자격자 및 진행조건 통지	8월 29일(화)
회사소개서 등 Information Package 배포	8월 29일(화)
예비실사자격자의 예비실사	8월 29일(화) ~ 9월 26일(화)
공장방문 및 경영진 설명회*	9월 6일(수) ~ 9월 19일(화)
구속력 있는 입찰서 제출 마감	9월 27일(수)

\* 공장방문 및 경영진 설명회는 예비실사자격자 별로 1일 이내에 진행될 예정이며, 대략 공장방문 대략 1시간, 경영진 설명회 대략 2시간(Q&A 포함)으로 구성될 예정임. 구체적인 시간 및 장소 등은 예비실사자격자 별로 개별 통보될 예정임.

## VIII. 기타 유의사항

입찰참가희망자들은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1. 입찰참가희망자들은 입찰절차에 참가하기에 앞서 입찰절차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야 하고, 자체적으로 실사를 수행하고 본 거래와 입찰절차에 참가함에 따른 이익과 위험을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회계와 경영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매각주간사는 어떠한 입찰참가희망자에 대하여도 본 거래가 적합한지를 판단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입찰참가희망자들이 매각주간사 또는 회사의 다른 자문사에 의하여 직접 또는 그를 대리하여 제공된 또는 제공될 정보(회사소개서, 회계 및 법률실사보고서를 포함)에

대하여 검토 및 검증하는 것과 회사, 입찰절차 및 본 거래에 관한 법적, 사실적인 문제들을 확인하는 것은 전적으로 입찰참가희망자의 책임입니다. 매각주간사는 위 정보에 관하여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매각주간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위 사항들에 관한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혹은 기타 다른 점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각 입찰참가희망자는 매각주간사가 본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또는 제공할 정보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제공한 또는 제공할 설명에 관하여 그 정확성, 완전성, 공정성 및 그 외 기타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진술과 보증을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라도 전혀 한 바가 없으며, 장래에도 하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3. 입찰참가희망자들은 (i) 본 안내서의 어떠한 내용이나 본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를 위하여 또는 회사가 또는 매각주간사에 의하여 혹은 다른 대리인을 통하여 제공된 또는 제공될 정보나, 제공된 또는 제공될 구술 혹은 서면 형태의 설명이 투자, 법률 또는 세무에 관한 자문의견으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과 (ii) 개별 입찰참가희망자들은 그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위 사항에 관한 독립된 자문의견을 얻었거나 얻을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동의합니다.
4. 인수의향서와 비밀유지확약서, 확약서 및 첨부 양식 서류들을 포함한 인수의향서 패키지는 제출 마감기한 내에 제출장소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제출된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전자메일, 우편, 팩스 접수는 불가합니다. 다만, 인수의향서 패키지 접수기간 이후의 추가접수 여부 및 접수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 및 매각주간사의 고유권한이며, 입찰참가희망자들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5. 일단 접수된 인수의향서 등 관련서류들은 매각주간사의 승인 없이 취소, 철회, 회수, 교환 및 변경될 수 없습니다.
6. 예비실사자격자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회사 및 매각주간사의 고유권한이며 입찰참가희망자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인수의향서 패키지는 실제 입찰참가희망자의 등록된 인감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와 구성원의 것이 모두 포함됩니다). 등록

인감제도가 적용되지 않거나 불가능한 경우, 해당 입찰참가희망자는 권한 있는 서명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는 공증된 서명 등 다른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8. 인수의향서 패키지의 접수 후, 회사는 매각주간사와의 협의 하에 복수의 예비실사자격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예비실사자격자에게 통지하고 입찰절차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예비실사자격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회사에 대한 정리절차가 개시될 당시의 대주주 또는 그와 회사정리등규칙 제42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입찰참가희망자(권소시업의 경우 권소시업 대표자 또는 구성원을 모두 포함합니다)인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희망자는 예비실사자격자로 선정되지 못하며, 또한 예비실사자격자로 선정된 이후에도 위 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실질적인 입찰참가희망자인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예비실사자격자 선정 및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취소됩니다.
9. 정보이용료는 입찰참가희망자가 예비실사자격자에서 탈락하는 경우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0. 본 안내서에서 언급되었듯이, 입찰참가희망자들은 다른 투자자와 권소시업을 구성하여 권소시업의 형태로 입찰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권소시업은 유상증자를 통한 최대의 지분 소유자 또는 매수 이후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자를 그 대표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예비실사자격자의 선정 이후 권소시업의 대표자를 제외한 나머지 구성원에 한하여 회사와 매각주간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구속력 있는 입찰서 제출 후 변경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회사와 매각주간사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변경된 경우, 해당 권소시업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입찰 참가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권소시업의 구성원들은 인수의향서 기타 입찰관련서류의 내용과 취지를 숙지하고 권소시업의 구성원으로 참여한다는 것을 전제하며 권소시업 대표에 의한 또는 권소시업 대표에 대한 의사표시 및 통지는 모든 권소시업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11. 각 입찰참가희망자는 그 자문사와 대리인들의 비용을 포함하여 본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예비실사자격자 혹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 및 입찰절차 참가를 어느 시기에 어떠한 이유로 중단하였는지와 상관없이, 모두

부담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입찰참가희망자는 위 비용에 대하여 그 일부라도 회사, 매각주간사, 회사 또는 매각주간사의 다른 자문사 혹은 그들의 개별 임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상환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12. 각 입찰참가희망자는 자신의 금융, 회계, 법률 또는 다른 자문사를 선임하는 경우(본 안내서 수령 이전에 이미 선임된 경우 포함) 이를 대표주간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13. 동일인이 복수의 인수의향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자신의 명의를 아니라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서 제출하는 경우 포함).
14. 입찰참가희망자들이 제출한 서류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15. 본 거래에 관한 자료와 정보에 대한 입찰참가희망자의 요구, 제출 및 설명은 모두 매각주간사를 통하여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방법을 불문하고, 입찰참가희망자들이 직접 회사 및 그 임직원 또는 고용인과 연락할 수 없습니다.
16. 매각주간사는 자신의 전적인 재량으로써, 필요하지 않거나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정보는 제공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7. 본 거래와 관련된 일정 서류는 한글본과 그에 첨부된 영문본으로 제공될 것입니다. 영문본은 입찰참가희망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서 한글로 작성된 서류와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언제나 한글본이 기준이 되며 이러한 차이로 인한 모든 위험은 입찰참가희망자가 부담합니다.
18. 본 거래와 관련된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법이 적용되며 대한민국법에 따라 해석됩니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입찰참가희망자가 회사 또는 매각주간사에게 제출하는 입찰 관련 서류에 기재되는 금액은 기재 당시에 효력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통화로 표시되어야 하고, 입찰참가희망자가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비용, 수수료, 인수대금 등은 원화인 현금 또는 시중은행 발행의 자기앞수표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IX. 맺음말

회사와 매각주간사는 본 거래와 관련된 일정과 절차를 어떠한 이유에서건 사전 고지 없이 변경, 연기 또는 취소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변경, 연기 또는 취소로 인한 입찰참가희망자의 일체의 손실, 손해, 비용 등에 대하여는 회사, 매각주간사, 회사 또는 매각주간사의 다른 자문사와 그들의 개별적인 임직원, 고용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거래와 관련하여 의문이 있으시면, 지체 없이 아래 표에 기재된 대표주간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십시오.

삼정 KPMG FAS Inc.

성명	직책	전화	휴대폰	E-mail
정원용	전무	82 2 2112 0720	82 11 713 5774	wonyongjung@kr.kpmg.com
이재현	이사	82 2 2112 0714	82 11 9728 6479	jaehyeonlee@kr.kpmg.com
윤창규	차장	82 2 2112 0995	82 17 244 0615	changgyuyoon@kr.kpmg.com

회사를 대신하여, 본 거래에 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삼화회계법인

삼정 KPMG FAS Inc.

법무법인바른

대표회계사

대표이사

대표변호사

김길원

서알란 루빈

김동건

별첨:

[별첨 1] 단독 입찰참가희망자용 신청서 양식

[별첨 1-1] 컨소시엄 입찰참가희망자용 신청서 양식

[별첨 2] 비밀유지확약서

[별첨 3] 확약서

[별첨 4] 실사보고서 수령 확약서

(별첨 1)

신 청 서  
(단독 입찰참가희망자용)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및 매각주간사 귀중

신청자(단독 입찰참가희망자)의 명칭

상호		대표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업종	
주소			
담당자 성명(직위)			
담당자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하기 서명자는 ㈜삼보컴퓨터의 잠재적 매각에 참가하고자 본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1) 인수의향서(자유 양식)  
(2) 비밀유지확약서  
(3) 확약서  
(4) 실사보고서 수령 확약서

2006년 8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첨 1-1)

## 신 청 서

(컨소시엄 입찰참가희망자용)

###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및 매각주간사 귀중

1. 컨소시엄의 명칭 : \_\_\_\_\_

2. 컨소시엄 대표자의 명칭

상호		대표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업종	
주소			
담당자 성명(직위)			
담당자 연락처	전화:		
	팩스:		
	이메일:		

3. 컨소시엄 참가자의 명칭

상호(성명)	대표자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하기 서명자는 ㈜삼보컴퓨터의 잠재적 매각에 참가하고자 본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서류:
- (1) 인수의향서(자유 양식)
  - (2) 비밀유지확약서
  - (3) 확약서
  - (4) 실사보고서 수령 확약서



2006년 8월 일

컨소시엄 명칭 :

컨소시엄 대표자 : (인)

컨소시엄 참가자 : (인)

컨소시엄 참가자 : (인)

컨소시엄 참가자 : (인)

(별첨 2)

## 비밀유지확약서

###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및 매각주간사 귀중

당사(“투자자명”, “주소”)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1125-1에 소재한 정리회사 주식회사 삼보컴퓨터(이하 “회사”)의 인수(이하 “거래”)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하여 “회사”의 평가와 관련된 “회사”의 정보 및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러한 정보 및 자료(이하 “기밀정보”)를 “회사”, 그 자회사 및 계열회사 또는 “회사”의 자문사나 기타 대리인으로부터 받는 조건으로, 당사는 다음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당사는 “회사” 또는 “회사”의 자회사, 계열회사 또는 그들의 개별적인 사업과 운영, 자산 혹은 재무상태, 그리고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대리인, 직원, 변호사, 회계사, 자문사, 기타 대표자(이하 총칭하여 “대표자들”)에게 “회사”가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제공한 모든 정보 및 자료와, 이를 기초로 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대표자들”이 작성한 모든 자료(요약, 분석 및 주식 포함)가 “기밀정보”에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또한 “기밀정보”에는 “거래”에 관한 논의 또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및 그러한 논의 또는 협상의 조건이나 진행상황도 포함됩니다. 단, 당사에게 제공될 당시 당사가 입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미 공지의 사실인 정보와 “회사”가 공개하여 향후 공지의 사실이 되는 정보는 “기밀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당사는 “기밀정보”를 오로지 “회사”를 평가하고 “거래”에 참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할 것을 확약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당사는 “회사”를 평가하거나 “거래”에 참여하는 기간 및 그 이후 3 년 동안 “기밀정보”를 대외비로 유지하고, “회사”가 공개 또는 사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특정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여 주지 않는 한, 어떤 “기밀정보”도 제3 자에게 공개하거나 상기 언급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동의합니다. 본조의 전술한 규정은 당사의 “대표자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적용됩니다.
  - a. 당사는, 당사의 “대표자들”이 당사가 “회사”를 평가하고 “거래”에 참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기밀정보” 부분을 “대표자들”에게 공개할 수 있습니다.
  - b. 위 제2(a)조에서 허용한 공개를 하기 이전에 그리고 그러한 공개를 하는 조건으로서, 당사는 공식적으로 각 해당 “대표자들”에게 본 비밀유지확약서의 조건(이하 “비밀유지확약”)을 알려 주고 동 조건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며 동 조건의 위반 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입니다.
3. 법률 또는 관할 당국의 명령에 의하여 당사 또는 당사의 “대표자들”이 “기밀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청 또는 요구 받는 경우, 당사는 “회사”에게 즉시

서면으로 이를 통지하고, “회사”가 해당 요청 또는 요구로부터 면제될 수 있도록 “회사”를 지원할 것입니다. 만일 면제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당사는 직접 또는 해당 “대표자들”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는 “기밀정보” 부분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지득한 자나 관할 당국이 해당 “기밀정보”를 기밀로 취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4. 당사는 “회사” 또는 삼정 KPMG FAS Inc., 삼화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바른(이하 “매각주간사”)이 “회사”의 “매각주간사”의 권한으로,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 중 누구도 “기밀정보”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제공한 또는 제공할 기타 모든 정보, 자료나 교신의 정확성, 완전성 또는 기타의 점에 대하여 진술이나 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며 앞으로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회사”, “매각주간사” 또는 그들의 “대표자들”에 의한 서면 혹은 구술상의 어떠한 언급도 그러한 진술이나 보증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5. 당사의 평가 및 “거래” 참여가 최종 거래 문서들로 실현되지 않을 경우, 당사는 서면, 전자 또는 기타 기록 형식에 의한 “기밀정보” 일체 그리고 “기밀정보”로부터, 이에 관하여 또는 이에 기초하여 당사나 당사의 “대표자들”이 작성한 주석, 메모, 기타 문서와 전자적 방법이나 다른 기타의 수단 에 의한 기록 및 저장물 일체(“기밀정보”의 내용 또는 그 일부에 대한 요약, 분석 및 주석을 포함함)를 신속히(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가 본건 “거래”로부터 배제된 때로부터 2 주 이내) (i) “회사”에게 반환하거나, (ii) 파쇄할 것입니다(그리고 파쇄하였다는 확인 서면을 “회사”에게 교부할 것입니다).
6. 투자계약서의 당사자들간 “거래”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및 논의가 종료되거나 “거래”가 종결된 날로부터 3 년 동안, 당사는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현재 “회사” 또는 “회사”의 각 자회사에 재직 중이면서 당사가 “거래”와 관련하여 “회사”의 평가결과나 다른 방법으로 알게 된 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취업을 유인하거나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합니다.
7. 본 “비밀유지계약”은 당사와 “회사” 간에 체결된 이전의 비밀 유지 또는 유사 약정들을 대체합니다.
8. 본 “비밀유지계약”은 국제사법상 원칙과 관계없이 대한민국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해석됩니다. 본 “비밀유지계약”과 관련하여 분쟁 또는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당사자들은 우선 서로 협조하여 해당 분쟁 또는 의견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협조에 의하여 해결하지 못하는 분쟁 또는 의견의 불일치로 인하여 제기되는 소송은 대한민국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며 대한민국의 법령에 의하여 해결됩니다.
9. 본 “비밀유지계약”의 어느 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 조항은(그 무효인 범위 내에서) 효력이 없으며, 본 “비밀유지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다른 조항들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0. “회사”나 “매각주간사”가 본 “비밀유지확약” 하에서 어떠한 권리, 권한이나 특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그러한 권리, 권한이나 특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 또는 일회적 행사가 향후의 그러한 권리, 권한이나 특권의 추가 행사의 배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11. “회사”의 서면 승인이 없는 한 본 “비밀유지확약”의 조건의 변경이나 포기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12. 본 “비밀유지확약”은 한글로 작성되나 당사의 편의를 위하여 영문으로도 “비밀유지확약”을 작성하는 경우 영문으로 된 “비밀유지확약”이 한글로 작성된 본 “비밀유지확약”과 해석상 차이가 나는 경우 언제나 본 한글로 된 “비밀유지확약”이 기준이 되며 이러한 차이로 인한 모든 위험은 당사가 부담합니다.
13. 당사가 “매각주간사”에 의하여 예비실사자격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본 “비밀유지확약”은 자동적으로 소멸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당사는 “회사” 및 “매각주간사”에 대하여 더 이상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006년 8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컨소시엄 입찰자의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와 참가자가 각각 기명 날인하여 제출(연명으로 제출 불가)합니다.

(별첨 3)

## 확약서

###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및 매각주간사 귀중

하기 서명자는 본 확약서로서, 삼정 KPMG FAS Inc., 삼화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바른이정리회사 주식회사 삼보컴퓨터(이하, “회사”)의 잠재적 매각과 관련하여 “회사”의 매각주간사의 권한에 기하여 배포한 2006년 8월 7일자 인수의향서 안내서(이하 “안내서”) 상의 기재된 조건 및 지침을, 입찰참가희망자로서의 모든 인정, 동의 및 이행 사항을 포함하며 그에 제한되지 아니하고, 수락하고 동의합니다.

인수의향서(“안내서”에 정의된 바에 따름)의 제출과 관련하여 하기 서명자는 매각주간사와 “회사”가 그의 전적인 재량으로 실사를 수행할 입찰참가희망자(이하 “예비실사자격자”)를 선정(이하 “선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그러한 “선정”을 수락할 것과 하기 서명자가 “예비실사자격자” 또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위 “선정”에 대해 어떠한 이유나 방법에 의하든지 간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입찰참가희망자가 컨소시엄인 경우 컨소시엄의 구성원들은 인수의향서 기타 입찰관련서류의 내용과 취지를 숙지하고 컨소시엄의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컨소시엄 대표에 의한 또는 컨소시엄 대표에 대한 의사표시 및 통지는 모든 컨소시엄 구성원들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2006년 8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컨소시엄 입찰자의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와 참가자가 각각 기명 날인하여 제출(연명으로 제출 불가)합니다.

(별첨 4)

## 실사보고서 수령 협약서

### 삼정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바른 귀중

당사(본인)는 정리회사 주식회사 삼보컴퓨터(이하 “회사”)와 삼정 KPMG FAS Inc., 삼화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바른(이하 “매각주간사”)이 추진 중인 “회사”의 기업매각과 관련하여 2006년 7월 31일자로 삼정회계법인이 작성한 자산/부채실사보고서(이하 “회계실사보고서”) 및 법무법인바른이 작성한 소송현황 등에 대한 실사보고서(이하, “법률실사보고서”라 하고, 총칭하여 “실사보고서”)를 제공 받음에 있어 다음 사항들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1. 동 “실사보고서”는 “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의 매각을 위한 목적으로 삼정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바른이 “회사”에 관하여 작성한 것이며, 동 “실사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삼정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바른은 “회사”의 경영진이 제공한 사실이나 정보 또는 설명에 대하여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여하한 조사나 독립적인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동 “실사보고서”는 “회사”에 대한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의 매각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당사(본인)가 “회사”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특정한 요구사항을 감안하지 못하였을 수 있으며, 따라서 삼정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바른은 당사(본인)에게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동 “실사보고서”는 2006년 7월 31일자로 작성되었으며, 삼정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바른은 그 이후로 어떠한 검토도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동 “실사보고서”에는 작성일 이후 발생하였을지도 모르는 중요한 사건이 포함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3. 당사(본인)는 동 “실사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삼정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바른(동 법인들의 파트너, 종업원, 대리인 등을 포함함)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이나 계약, 과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4. 동 “실사보고서”에 대한 사용은 전적으로 당사(본인)의 위험부담 하에 이루어집니다.
5. 당사(본인)는 동 “실사보고서” 또는 그 일부를 본 협약서 상의 조건들과 같은 조건으로 당사(본인)의 전문 자문사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하한 제3자에게도 삼정회계법인 및 법무법인바른의 서면동의 없이는 제공하지 않을 것입니다(법원의 명령이나 정부당국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

6. 본 협약서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됩니다.

상기 내용에 관하여 당사(본인)는 조건없이 협약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기명 날인합니다.

2006년 8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 컨소시엄 입찰자의 경우 컨소시엄 대표자와 참가자가 각각 기명 날인하여 제출(연명으로 제출 불가)합니다.